부록 Ⅰ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부록 표 Ⅰ-1〉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항목	내용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 기준 • 운전자가 작동모드 및 오프모드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할 것 • 엔진을 껐다 다시 켤 때 오프모드일 것(단, 정차 시 엔진이 꺼지는 경우 제외) • 이용 조건을 충족할 것 - 운전자: 작동모드 개시, 착석, 안전띠 착용, 운전 전환 준비상태 - 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 기타: 운행가능영역, 물체감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작동 • 운전자의 조향입력, 제동페달 또는 가속페달 조작 시 자동으로 해제될 것 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주행상황 및 전방거리제어 기준 • 운행가능영역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 • 차선을 가로지르지 않을 것(현행 레벨3는 차선변경이 금지됨) • 전방감지거리 이내의 자동차, 차선, 도로구조를 감지할 수 있을 것 • 종방향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 • 도로시설 및 환경조건에 따라 자동차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것 • 전방최소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속도를 조절할 것 • 전방에 정차 중인 차가 있는 경우 그 후방에 차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을 것 •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충돌위험 감지 및 비상운행을 실시할 것 다. 부분자율시스템의 감지거리 및 지정최대속도 기준(생략) 라. 부분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한 기준 • 운전전환요구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할 것 • 운전전환요구의 시작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 - 운전전환요구가 예상되는 경우(고속도로 진출): 15초 전에 운전전환요구 - 운전전환요구 예상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운전전환 요구 - 고장 발생 시: 즉시 운전 전환 요구 • 운전전환요구의 과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 - 감속시킬 수는 있으나 정지시키지는 않을 것 - 5초 이내 운전조작이 없으면 비상등을 켤 것 - 10초 이내 운전조작이 없으면 위험최소화운행을 자동으로 시작할 것 • 운전전환요구의 경고는 시각·청각, 시각·촉각, 시각·청각·촉각 중 선택할 것 마. 운전자와 자동차 간 상호작용에 관한 기준(생략) 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위험최소화운행기준(생략) 사.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비상운행기준(생략)

〈부록 표 Ⅰ-1〉 계속

항목	내용
고장에 대한 안전기준	가. 고장에 대비한 설계 기준 • 전자제어장치의 오류, 센서의 단선, 전기신호 차단 등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될 것 나. 고장 발생 시 경고 및 작동 기준(생략)
운전자 모니터링시스템 성능기준	가. 일반기준 • 착석 여부, 안전띠 착용 여부, 운전조작 가능 여부를 감지할 수 있을 것 나. 운전자 착석 여부 등에 대한 경고 및 작동 기준(생략) 다.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 여부* 감지 등 기준(생략) * 30초 이내 제어장치를 조작한 경우, 35초 이내 의도적으로 머리나 몸을 움직인 경우, 4초 동안 눈을 감지 않은 경우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성능기준	가. 기록 대상 • 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 운전전환요구, 운전자 조작입력 감소·억제, 비상운행 시작 및 종료, 사고기록장치 작동, 충돌인지, 위험최소화운행 시작, 자동차로유지 기능의 심각한 고장, 자동차의 심각한 고장 나. 기록 내용 • 사건 종류, 발생 사유, 발생 날짜·시각 다. 기록 저장 및 추출 • 최소 6개월 이상 또는 2,500건 이상의 기록사항을 저장 가능할 것 라. 조작 방지(생략) 마. 작동상태 확인(생략)

자료: 자동차규칙 별표 27

부록 Ⅱ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삼성화재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1)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용어 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통약관 제1장 「배상책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자율주행모드(*1)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2)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3)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작동되어 발생한 사고

②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③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

> ▶ 용어 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모드'라 함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자동차 스스로 운행 중인 상태를 말하며,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운전석에 탑승 중인 사람을 운전자 및 운전 중인 것으로 봅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라 함은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장비, 소프트웨어 등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능형교통체계 등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7조의 피보험자와 같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피보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일방과실 사고인 경우. 단, '2. 보상하는 손해'의 ②에 해당하는 고의 사고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를 위한 회사의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조사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를 위한 회사의 요청에 협력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며, 피보험자는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